

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안(대안)

제출년월일 : 1996. 1. 29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의안번호	제111호
------	-------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가. 95. 10. 6 최순영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발의된 부천시학교급식후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(95. 11. 6 제42회 임시회)한 바 있으며
- 나. 보다 적극적 대처를 하고자 96. 12. 28 제43회 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2차 회의 시 부천시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
- 다. 제45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및 제5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제안하는 것임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가. 학교급식은 부천시 전시민의 공통 관심사이며 부천시 전의원들이 조례 제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안으로서
- 나. 95. 11. 6 제42회 임시회의 시 상임위 심사를 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어 조례 제정에 어려움이 따랐으나
- 다. 정부에서는 96. 1. 1부터 시장·군수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였으며
- 라. 96. 4. 19 지방재정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시장·군수는 학교급식 시설 및 설비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시·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함에 따라
- 마. 최순영 의원 19인이 의원발의한 조례안은 관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조례로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여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음

3. 주요골자

- 가. 학교급식시설 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함(조례 제2조)
- 나. 학교급식시설 보조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학교급식위원회 설치(조례안 제3조)
- 다. 학교급식시설 보조사업 범위(조례안 제4조)
- 라. 예산적정 집행여부를 알기 위한 검사 실시(조례안 제6조)

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 및 시·군및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지원사업(이하 “학교급식시설”이라 한다)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관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교급식시설 대상) 학교급식시설 대상은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(이하 “각급학교”라 한다)로 한다.

제3조(위원회 구성) ①학교급식시설에 보조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학교급식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기획실장, 보건사회국장, 부천시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3인, 시의원 3인, 교육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학교급식시설 보조) ①시장은 예산안 심의요구 시 학교급식시설 보조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부천시의회에 제출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시설 보조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부천시의 학교급식 현황
2. 학교급식의 재정현황
3. 당해년도 급식지원 보조금액
4. 연도별 학교급식시설 지원계획

제5조(보조신청 및 지급) ①시장은 연도개시 10일 이내에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봉지하여야 하며, 각급 학교의 장은 연도개시 1월 내에 보조신청서를 제출한다.

②보조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대상으로 위원의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연도개시 2월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지원사업의 보조금액을 연도개시 6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

제6조(검사)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